

“사법·입법감시, 법률·인권교육, 사법·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”

法律(消費者)聯盟
WWW.GOODLAW.ORG

金大容(사법교육원 이사장) 魯宗基(전 한국기자협회장) 徐聖喆(시민운동전문 매체) 申 平(로스쿨교수, 판법원) 嚴虎聲(변호사, 판국회의원) 李子賢(장애인 상임대표) 趙希倫(교수, 전 헌법학회장)
(우) 137-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-7 소강빌딩 전화. (02) 523-8760~7 모사전송. (02) 585-9228 E-MAIL: GOODLAW@GOODLAW.ORG

**박근혜 당선인, ‘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 44.46%(부정적 응답의 5배)
사법은, 현재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, 응답자의 92.80%**

■ **법률소비자연맹,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법의식 조사 발표** ■

1.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**법률소비자연맹(총재 김대인)**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**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민 법의식 조사** 결과를 발표했다. <표본오차 : 95%신뢰수준에 ± 2.73%p>

2. 설문 조사결과는 **박근혜 당선인이 ‘법을 잘 지킬 것이다’ 는 의견이 44.46%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, ‘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’ 는 의견은 8.83%에 불과하여 박근혜 당선인의 준법의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(5배 이상)가 많았으며**, 박근혜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‘높은 것 같다’ (42.37%), ‘매우 높은 것 같다’ (20.91%)가 전체 응답자의 63.28%였으며, ‘사법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’ (10.46%), ‘없는 것 같다’ (21.84%)로 부정평가가 32.3%였다.

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‘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’ 는 의견이 43.07%, ‘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’ 38.96%, ‘더 많이 생길 것이다’ 15.26% 순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친인척·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

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① **법관, 검사장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0.93%** ② **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8.93%**, ③ **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1.19%**, ④ **변호사보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84.59%**, ⑤ **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라는 의견이 85.21%**, ⑥ **법률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의견이 91.40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**, ⑦ **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지만, 응답자의 69.46%는 ‘사형집행을 해야 한다’ 고 응답했고**, ⑧ **법원, 검찰,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이란 의견이 51.90%였으며**, ⑨ **법조계의 법률서비스가 (매우) 미흡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.84%였다.**

3. 이번 조사를 주관한 **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**는 ‘**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입,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**’ 고 강조하고, ‘**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, 박근혜 정부가 적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**’ 고 역설했다.

붙임 : 국민법의식조사 분석결과(홈페이지 WWW.GOODLAW.ORG에도 게시됨). 끝.

법률(소비자)연맹 총본부

전화. (02) 523-8760~7 팩스. (02) 585-9228 <담당 : 홍금애 실장 / 윤소라 부장>

**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
국민법의식 조사**

I 법의식조사 개요

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성인남녀 1,291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,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구현에 활용하고자 실시함.

- (1) 조사기관 : **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** (총재 김대인)
- (2) 조사방법 : 25개항의 **설문으로 대면조사**
- (3) 조사대상 : **성인남녀 1,291명**

<표본오차 : 95%신뢰수준에 ± 2.73%p>

II 응답자 현황

1. 성별 응답자현황

| 구분 | 남성 | 여성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인원(명) | 599 | 692 |
| 비율(%) | 46.40% | 53.60% |

2. 직업별 응답자현황

| 구분 | 회사원 | 공무원 | 자영업자 | 주부 | 대학(원)생 | 기타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인원(명) | 289 | 172 | 142 | 124 | 335 | 229 |
| 비율(%) | 22.42% | 13.34% | 11.02% | 9.62% | 25.99% | 17.73% |

3.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(또는 현재 진행중) 경험유무별 응답자현황

| 구분 | 있다 | 없다 | 무응답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인원(명) | 150 | 1130 | 11 |
| 비율(%) | 11.72% | 88.28% | 0.85% |

III 주요 항목분석

I. 사법(법원·검찰)에 대한 신뢰

01. 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는 뒤떨어져 있다, 응답자의 54.84%

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분야의 서비스보다 ‘매우 뒤떨어졌다.’는 의견이 응답자의 20.45%, ‘뒤떨어졌다’는 의견이 34.39%로,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의견이 54.84%인 반면에, ‘앞섰다’ (4.11%), ‘매우 앞섰다’ (1.01%) 등 앞서 있다는 의견은 겨우 5.12%에 불과했다.

《우리나라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매우 뒤떨어졌다. | 264 | 20.4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뒤떨어졌다. | 444 | 34.3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엇비슷하다. | 500 | 38.7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앞섰다. | 53 | 4.1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5. 매우 앞섰다. | 13 | 1.0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6. 기타/ 무응답 | 17 | 1.32% |

02. 법원(사법부)과 검찰·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(51.90%)

법원(사법부)과 검찰,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.90%가 ‘검찰’이라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법원은 21.92%, 경찰은 20.68%였다.

《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법원 | 283 | 21.92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검찰 | 670 | 51.9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경찰 | 267 | 20.6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/ 무응답 | 71 | 5.50% |

03. 검찰은 권위적 기관, 응답자의 79.47%

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에 대해 권위적 기관이라는 응답이 79.47%로 압도적으로 많았고, 전문기관 (8.60%), 공정한 기관(5.42%), 서비스 기관(4.18%) 순으로 나타나, 검찰을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명중에 한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《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권위적 기관 | 1026 | 79.4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서비스 기관 | 54 | 4.1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공정한 기관 | 70 | 5.42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전문 기관 | 111 | 8.6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5. 기타 / 무응답 | 30 | 2.32% |

04. 변호사는 법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, 응답자의 72.81%

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‘법지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’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2.81%에 달하였으며, ‘공무원 같은 전문직업인’은 14.79%, ‘사회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’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8.91%, ‘일반 자영업자’라는 응답은 3.49%였다.

《변호사에 대한 평소느낌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법지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| 940 | 72.8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사회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 | 115 | 8.9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공무원 같은 전문직업인 | 191 | 14.7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자영업자 | 45 | 3.49% |

05. 변호사의 도움은 받고 싶다, 응답자의 80.48%

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.48%인 1039명이 ‘받고 싶다’고 응답하여, 변호사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, ‘받고 싶지 않다’는 14.25%에 불과했다.

《당사자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부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받고 싶다 | 1039 | 80.4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받고 싶지 않다. | 184 | 14.2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68 | 5.27% |

06. 변호사 비용 때문에 나홀로 소송하겠다, 응답자의 75.68%

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, 변호사없이 혼자 하고자 하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‘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’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5.68%에 달해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문제임을 나타냈다. 반면, ‘변호사의 실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’ (16.27%), ‘스스로 법을 잘 알기 때문’ (4.88%)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.

《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| 977 | 75.6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변호사의 실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| 210 | 16.2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스스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| 41 | 3.1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| 63 | 4.88% |

07. 비리검사는 일반인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, 응답자의 74.13%

‘당사자(이해관계자)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지’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4.13%는 ‘일반시민 보

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' 고 응답했고, '일반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' 는 의견은 22.46%에 불과하여, 비리 검사에 대한 엄한 처벌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나타냈다.

《비리검사의 처벌 강도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. | 290 | 22.4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. | 957 | 74.1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일반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. | 29 | 2.2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| 15 | 1.16% |

08. 법률용어는 어렵다, 응답자의 59.10%

검찰이나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응답자의 59.10%는 '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' 고 응답한 반면, '쉽게 이해된다' 는 응답은 5.81%에 불과했다.

《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쉽게 이해된다. | 75 | 5.8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간혹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다. | 437 | 33.8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. | 763 | 59.1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| 16 | 1.24% |

09.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재한다, 응답자의 92.80%

유전무죄 무전유죄(有錢無罪 無錢有罪 : 돈 있으면 죄가 없고,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)의 존재에 대해서 응답자의 92.80%가 '존재한다' 고 응답한 반면, '존재하지 않는다' 는 의견은 5.50%에 불과하여, 국민 대다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《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존재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존재한다. | 1198 | 92.8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존재하지 않는다. | 71 | 5.5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22 | 1.70% |

10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, 긍정평가, 응답자의 63.28%
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에 대한 평가에서 '사법개혁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다' 는 의견이 20.91%, '높은 것 같다' 는 의견이 42.37%로 긍정적인 평가가 63.28%였다.

반면, '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' 는 의견이 21.84%, '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' 는 의견이 10.46%로 10명중 3명꼴로 박근혜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

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.

《박근혜 당선인과 새정부의 사법개혁의지에 대한 평가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사법개혁 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다 | 270 | 20.9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사법개혁 의지가 높은 것 같다. | 547 | 42.3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. | 282 | 21.84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. | 135 | 10.4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5. 기타 | 57 | 4.42% |

11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 잘 지킬 것, 응답자의 44.46%

박근혜 당선인이 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, '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이다.' 는 의견이 44.46%로, '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.' 는 의견(8.83%)보다 5배 이상 높았다.

《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법 준수에 대한 예상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잘 지킬 것이다. | 574 | 44.4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다른 대통령과 같을 것이다. | 561 | 43.4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. | 114 | 8.8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| 42 | 3.25% |

12. 박근혜 새정부의 친인척이나 측근비리 적을 것, 응답자의 38.96%

박근혜 새정부에서 친인척이나 측근비리의 발생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'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' 라는 의견이 38.96%로, '다른 정부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' 라는 의견(15.26%)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.

반면, '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' 라는 의견이 43.07%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《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의 발생에 대한 예상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. | 197 | 15.2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. | 556 | 43.0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. | 503 | 38.9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기타 | 35 | 2.71% |

II. 법원 및 검찰제도의 개혁

13. 법관, 검사장 공선제도 도입해야 한다, 응답자의 70.95%

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법관(판사)이나 검찰총장을 직접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(법관, 검사장 공선제도)의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묻은 질문에서 ‘도입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이 70.95%로 ‘도입에 반대한다’는 의견(23.63%)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.

《법관과 검사장의 공선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도입에 찬성한다. | 916 | 70.9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도입에 반대한다. | 305 | 23.6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70 | 5.42% |

14. 기소배심제도 도입해야, 응답자의 78.93%

기소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, ‘도입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이 응답자의 78.93%로, ‘도입에 반대한다’는 의견(17.74%)보다 4배이상 높게 나왔다.

《기소배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도입에 찬성한다. | 1019 | 78.9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도입에 반대한다. | 229 | 17.74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43 | 3.33% |

15. ‘특별수사기구’ 설치해야, 응답자의 81.64%

판사나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 신설에 대해서 응답자의 81.64%가 ‘설치에 찬성한다’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, ‘설치에 반대한다’는 의견은 15.18%에 불과하였다.

《특별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설치에 찬성한다. | 1054 | 81.64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설치에 반대한다. | 196 | 15.1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41 | 3.18% |

16. 국가형벌권 분산해야, 응답자의 75.29%

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, 경찰수사지휘권, 영장청구권등의 국가형벌권을 분산해서 다른 기관과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서 ‘형벌권도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’는 의견이 75.29%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며, ‘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’는 의견은 21.15%에 불과했다.

《국가형벌권 분산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형벌권도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. | 972 | 75.2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. | 273 | 21.1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46 | 3.56% |

17. 경찰이 독립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, 응답자의 71.19%

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(소위 경찰수사권 독립)에 대해, 응답자의 71.19%가 ‘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’고 한 반면, ‘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’는 응답은 23.93%에 불과했다.

《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. | 919 | 71.1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. | 309 | 23.9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63 | 4.88% |

18.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.28%로 높아

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(소위 피의사실공표)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‘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’는 응답이 63.28%로 높게 나온 반면, ‘인권보호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’는 의견은 30.29%에 불과했다.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심각성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《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. | 817 | 63.2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인권보호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. | 391 | 30.2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83 | 6.43% |

Ⅲ. 변호사제도 및 법률가양성제도

19.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, 1건당 300만원 이하라고 생각, 응답자 457명 (35.40%)

사건당 우리나라 변호사보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답변에서 3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명(34.55%)으로 그 뒤를 이었고, 500만원 초과 1000만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187명(14.46%)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, 10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은 30명(2.32%)이었다.

《우리나라 변호사보수에 대한 추측》

| 변호사 보수금액(건당) | 응답인원(명) |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300만원 이하 | 457 | 35.40% |
|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| 446 | 34.55% |
|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| 187 | 14.48% |
| 1000만원 초과 | 30 | 2.32% |
| 무응답 | 171 | 13.25% |

20. 변호사 보수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, 응답자의 84.59%

독일처럼 가정 ‘변호사보수법’ 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해, 응답자의 84. 59% 는 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’ 고 응답했다. 반면, ‘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’ 는 응답은 응답자의 12.94%에 불과했다.

《변호사 보수법 제정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. | 1092 | 84.5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. | 167 | 12.94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32 | 2.48% |

21. 변호사수가 증가하면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, 응답자의 60.19%

변호사수가 늘어나면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시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, 응답자의 60.19%는 ‘편리할 것이다’ 라고 응답하였으며, ‘현재와 같을 것이다’ 는 응답은 36. 56%에 불과했다.

《변호사수 증가와 법률서비스와 관련성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편리할 것이다. | 777 | 60.19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현재와 같을 것이다. | 472 | 36.56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42 | 3.25% |

IV. 헌법재판제도 및 기타

22. 헌법소원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해야, 응답자의 73.97%

변호사 없으면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응답자의 73.97% 는 ‘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’ 고 응답했다. 반면 ‘변호사강제주의를 존속시켜야 한다’ 는 응답은 21.07%에 불과했다.

《헌법소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. | 955 | 73.9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변호사 강제주의를 존속시켜야 한다. | 272 | 21.0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64 | 4.96% |

23.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허용해야, 응답자의 85. 21%

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100명 중 85명 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(85.21%)했고, ‘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반대한다’ 는 응답은 10명 중 1명 (11.15%)에 불과했다.

《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| 1100 | 85.21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반대한다. | 144 | 11.15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47 | 3.64% |

24. 법률교육 온국민이 바란다, 응답자의 91. 40%

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교육에 법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1.40% 는 ‘법생활교육활성화에 찬성한다’ 고 응답했다. 반면 ‘법생활교육 활성화에 반대한다’ 는 응답은 6.43%에 불과했다.

《법률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법생활교육 활성화에 찬성한다. | 1180 | 91.40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법생활교육 활성화에 반대한다. | 83 | 6.43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28 | 2.17% |

25. 사형수의 사형집행해야 한다, 응답자의 69.48%

사형수의 사형집행에 대해 응답자의 69.48%는 ‘집행해야 한다’ 는 응답을 하였고, ‘집행하지 않아야 한다’ 는 의견은 25. 87%였다.

《사형수의 집행행에 대한 의견》

| 항목 | 응답자(명) | 비율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집행해야 한다. | 897 | 69.48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 | 334 | 25.87%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기타 | 60 | 4.65% |